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가합582812	보증금 및 투자수익금반환 청구의 소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18. 5. 24.	
판 결 선 고	2018. 6. 21.	

주 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E로 상호변경되었다)을 운영하면서 산후조리원 내에 'F'라는 상호로 마사지실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원고의 부친인 G은 2009년경 피고로부터 투자의뢰를 받았고, 원고는 G과 함께 같은 해 6.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분투자약정을 체결하였으며, G은 같은 달 26.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

[지분투자약정서]

제2조 계약당사자

본 약정의 당사자 중 B(피고)을 "갑"이라고 하고 A(원고)을 "을"이라고 한다.

제3조 지분투자자금의 출자 및 지분비율

- 1) H 산후조리원과 I 산후조리원 내의 마사지실을 공동으로 운영함에 있어 갑의 지분 비율 중 을에게 20%의 지분을 약정하며,
- 2) 을의 지분에 관한 보증금을 2억 원으로 하고 을은 그 지분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4조 마사지실의 운영

갑은 마사지실을 운영한 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내역을 정산하고 그 결과의 이익금을 을에게 익월 5일까지 통보하여 지급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약정기간은 2009. 6. 26.부터 2010. 6. 25.까지로 한다.

다. 피고는 G의 계좌로 2009. 8. 19. 8,240,000원을, 같은 해 9. 7. 7,342,860원을, 같은 해 10. 6. 9,794,063원을, 같은 해 11. 5. 10,342,458원을, 같은 해 12. 7. 5,090,029원을, 2010. 1. 5. 9,515,141원을 각 송금하는 등 2012. 3. 30.까지 사이에 합계 233,782,663원을 송금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개인사업체인 위 F를 폐업하면서 딸인 J을 대표이사로 하여 산모케 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소의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다음 같은 장소에서 마사지실을 운영하였다. 피고(J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것으로 보인다)는 2012. 4. 25.부터 2017. 1. 23.까지 G의 계좌로 매월 500만 원씩 합계 2억 3,500만 원(2013년 합계 6,000만 원, 2014년 합계 5,500만 원, 2015년 합계 6,000만 원, 2016년 합계 5,500만 원, 2017년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원·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상 이익금의 20%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9. 11.경부터 2016. 11.경까지 매월 500만 원씩만 지급하면서 원고의 정산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않고 있는바,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분의 송달로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지분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¹⁾.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니라 G이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나아가 피고는 G과 사이에 2012. 3.경 이 사건 투자약정을 합의 해지한 다음 그 보증금을 2012. 4. 25.부터 2017. 1. 23.까지 사이에 매월 500만 원씩 합계 2억 3,500만 원을 분할상환하였으니 원고 또는 G에게 더 이상 지급할 금원이 없다고 다툰다.

3. 판 단

1) 원고는 당초 보증금 2억 원 및 투자수익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2018. 4. 30.자 준비서면에서 투자수익금 청구부분은 철회하였다.

가. 원고가 계약당사자인지 여부

(1)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비록 원고의 부친인 G이 주도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이 체결된 것이고, 피고가 G의 계좌로 이 사건 투자약정상의 수익금을 송금하여 오긴 하였으나, 이 사건 투자약정 당시 원고가 계약당사자로서 피고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접 서명, 날인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투자약정상의 계약당사자는 원고로 봄이 타당하다.

(3)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투자약정의 해지 여부 및 보증금 상환 여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투자약정의 해지에 관한 명시적인 약정서가 존재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1, 2, 3,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 피고가 G의 계좌로 2009. 8.부터 2012. 3.경까지는 불규칙하게 투자수익금 명목으로 3,500,000원에서 10,342,458원의 금원을 송금하여 왔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

에 따라 해당 월의 수익금 중 20%에 해당하는 금원을 송금한 것으로 보이는 점, ㉔ 피고는 2012. 3.경 원고와 동업형태의 F를 폐업하고 2012. 4.경부터 주식회사 형태의 소외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여 온 점, ㉕ 피고가 소외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이라면 그 투자수익금도 소외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계속 지급하였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도 별도의 투자약정 또한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소외 회사의 주주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㉖ 원고는 2012. 4.경부터 피고가 매월 500만 원씩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연말에 수익금을 정산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원고 또는 G이 피고 또는 소외 회사에게 정산금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㉗ 소외 회사는 2013년 당기순손익으로 180,764,759원을, 2014년 당기순손익으로 154,676,326원을, 2015년 당기순손익으로 235,294,162원을, 2016년 당기순손익으로 109,578,534원을 각 기록하였고, 위 각 당기순손익 중 원고 지분인 20%에 해당하는 금원은 각 26,152,951원, 30,935,265원, 47,058,832원, 21,915,705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당기순손익에 관계없이 원고에 매월 500만 원씩, 매해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송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투자약정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2012. 3.경 합의해지되고, 그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2억 원을 2012. 4.부터 2017. 1. 23.까지 사이에 분할하여 모두 지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선희

판사 정금영

판사 임미경